

보수 요율 및 정기 급여일의 서면 고지 가이드라인

2011년 4월 9일부로 발효되는 노동법 섹션 195.1에 따라,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노동 실시 전에) 다음에 대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고용인의 보수 요율
2. 초과시간 보수 요율, 고용인이 초과시간 규정 대상인 경우
3. 임금 지급 기준(시간당, 교대당, 주당, 개수 요율, 위원회 등)
4. 팁, 식사 및 숙소 지급 등 최소 임금의 일부로 고용주가 제시하려 하는 수당(있다면)
5. 정기 급여일
6. 고용주의 이름 및 사업명(DBA)
7. 고용주 사업체 본사 또는 중심 장소의 실제 주소 및 개별 장소인 경우, 고용주의 우편 주소
8. 고용주의 전화번호
9. **2020년 10월 1일 발효** - 해당될 경우, 공중 보건법("홈 케어 보조원 혜택") 3600 14-c항에 정의된 홈 케어 보조원 총 보상액의 최소 급여 중 혜택 부분; 노조기반요율 임금 또는 유사한 요건의 일부로 청구된 노조기반요율 보충 금액.

고용주는 영어 및 고용자의 원어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자 인정

고용주는 영어 및 고용자의 원어로 된 서면 고지를 수신했다고 인정하는 성명에 고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자는 자신이 자신의 원어를 올바르게 식별했음을 또한 고용자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서명 및 일자가 적힌 고지 및 인정서를 6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본을 고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 및 인정 서식

노동부(DOL)는 일반적 유형의 지급 약정서 서식들을 중국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이중 언어 버전을 포함해 준비했습니다. 고용자의 수신 인정 섹션은 노동부에 의해 준비된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노동부의 웹사이트, www.labor.ny.gov 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인쇄본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가 특정 언어로 된 서식을 제공치 않는다면, 고용주는 해당 고용자에게 영어로만 고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DOL이 발행한 준비 서식의 오류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만약 고용주 고지가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미래에 DOL 서식의 사용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LS 53 지시사항 참조: NYS 노동법 섹션 195.1에 따른 보수 요율, 급여일 및 고용자 인정 고지 서식에서 귀하의 특정 지급 약정서에 적합한 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과시간 요율

대부분의 고용자는 노동하는 한 주에서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보수 정요율의 1½배로 초과시간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초과시간에서 제외되는 몇몇 직업에서, 뉴욕주 노동부는 고용자가 자신의 초과시간에 대해 적어도 최소 지급의 1½배로 지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업은 주 및 연방법 모두의 초과시간 지급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농업 고용주는 달력상 한 주에서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보수 정요율의 1½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초과시간

농업 고용주는 휴일에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보수 정요율의 1½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사 도우미 고용주는 휴일에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보수 정요율의 1½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제 고용자

면제 고용자에 대한 고지는 적용되는 특정 면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급여일

정기 급여일은 수작업 노동자의 경우 최소 매주여야 하고, 사무 및 기타 노동자의 경우 최소 격주여야 하며, 위탁 판매원의 경우 최소 매달이어야 합니다.

기타 고지 요건

다음 유형의 고용자의 경우, 노동법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인용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위탁 판매원 (191.1c)
- 농장 고용자 (190-6.1)
- 환대산업 고용자 (146-2.2)
- 홈 케어 보조원(195)
- 노조기반요율 직원(195 & 220)

임시직 업체

노동부는 임시직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LS 50**). 서식은 노동부의 웹사이트에서 언거나 인쇄본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 및 서식의 사용은 노동법 섹션 **916.5**의 “임시직 업체” 용어의 정의를 만족하는 고용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자세한 정보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가까운 **NYS** 노동부, 근로기준 부서실로 전화하거나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r.ny.gov 를 방문하십시오.

Albany District

1220 Washington Ave.
Bldg. 12 Room 185A
Albany, NY 12226
(518) 457-2730

Buffalo District

295 Main Street
Suite 914
Buffalo, NY 14203
(716) 847-7141

New York City District

55 Hanson Place
11th Floor
Brooklyn, NY 11217
(212) 775-3880

Syracuse District

333 East Washington Street
Room 121
Syracuse, NY 13202
(315) 428-4057

Bronx District

55 Hanson Place
11th Floor
Brooklyn, NY 11217
(212) 775-3597

Garden City District

400 Oak Street
Suite 102
Garden City, NY 11530
(516) 794-8195

Rochester District

276 Waring Road
Room 104
Rochester, NY 14609
(585) 258-4550

White Plains District

120 Bloomingdale Road
White Plains, NY 10605
(914) 997-9521